

제3장 라벨링제도

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

□ 식품표시 제도

- FDA가 관할하며, 식품명, 내용물의 실중량, 원재료명, 영양분석표 등을 주 표시면 (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)이나 정보표시 (주 표시면의 바로 오른쪽)에 기재
- 식품표시제도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조항이 있음
 - 원재료표시: 이 조항은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선 농산물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
 - 영양분석표: 영양분석표 면제 대상으로 포장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식품의 경우 구매시점 (소매점)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진열대 별도표기 권장

□ 영양분석표시

- '90년부터 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 (영양표시 및 교육법)에 의해 시작된 조치로서 미국내 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류에는 상세한 영양분석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, 이 조치는 우리 농수산물 수출에 두 가지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
- 주정부에 따라서는 연방 식품의약국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성분분석표를 요구하기도 하며, 이러한 특별 요구사항은 지방정부와 품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특별한 조사가 요구됨

- 지방정부에서 FDA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세분화된 영양 분석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, 식품제조 과정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
- 미 정부에서는 영양분석표가 미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 3의 검사기관 (식품 제조 회사와 관계없는 제 3의 기관)에서 작성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요구함
-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, 미 정부에서는 문제의 식품을 다시 시험하고 새로운 증빙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얼마든지 반복 요구할 수 있음
-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전 미국내에서 허가된 검사기관으로부터 (이런 검사기관 들은 주로 미국내에 있음) 식품검사와 영양분석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미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함

□ 특징

- 식품라벨링 규정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라벨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하게 식품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음. 허위정보를 표시할 경우에는 부정 표시 식품(Misbranded Food)로 간주하여 수입이 금지됨. 그러나 라벨링 규정에 맞도록 개선된다면 수입이 허용 될 수 있음

□ 기본표기사항

- 식품의 명칭은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 표기하며 포장용기의 주표시면에 표기해야 하고 활자의 크기는 주표시면에 사용된 가장 큰 활자의 절반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함
- 순중량의 표시는 주요면 하단 30%위치에 표시하고 미국단위와 미터법단위로 함께 표시해야 함. 제조자, 포장자, 유통자의 명칭과 주소는 성분표시면과 같은 면에 기재해야 하며 예외가 없는 한 완전한 주소를 표시해야 함
- 성분표시는 라벨의 표시면, 측면 혹은 후면의 정보표시면에 표기할 수 있으나 제조자, 포장자 혹은 유통자와 같은 면에 표시해야 함. 성분의 목록순서는 중량

이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의 순으로 하고 통상명칭으로 기재해야 함.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성분도 반드시 표시해야만 함

□ 일반표기사항

- 라벨표시사항(Label statements)은 주표시면(principle display pannel ;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)이나 정보표시(Information pannel ; 주표시면의 바로 오른쪽)에 기재함
- 주 표시면에는 식품명과 실중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
- 정보표시면에는 주 표시면에 기재되지 않은 제조자, 포장업자,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, 원재료명과 영양표시 등과 같은 사항들을 표기함

□ 식품명(Statement of identity) 표기

- 식품명은 반드시 주 표시면에 표기되어야 하며, 일반적으로 표시면의 인쇄 중 가장 큰 것의 1/2 이상의 크기이어야 함
- 식품이 일반적, 통상적 이름을 갖는 경우 이를 식품명으로 사용하며 일반적, 통상적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식품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을 잘못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
- 식품명은 포장의 바닥과 평행하게 쓰여져야 함
- 식품명표기는 포장된 식품이 액체가 아닐 경우 ‘가늘게 썰어진 것인지(sliced)’ ‘썰지 않은 것인지(unsliced)’ ‘반으로 잘라진 것인지(halves)’ 등의 식품형태를 명시해야 함
- 어떤 신제품이 기존에 있던 식품과 유사하며 기존 식품의 대체재로 사용될 때, 만약 그 신제품이 기존의 것보다 필수 비타민, 무기질, 단백질 함량이 낮다면 신제품에는 ‘모방’(imitation)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
- ‘모방’(imitation)이라는 표기는 식품명과 같은 글자 크기와 선명도로 표시

- 과일이나 야채의 그림, 맛이나 외관, 라벨표기 등으로 소비자가 주스를 함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료는 주스(과일이나 야채의 천연즙)의 함량을 %로 표기해야 함
- 아래와 같이 향미(flavor)를 위해 소량의 주스가 함유된 음료에는 주스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
 - 제품에 ‘향미’(flavor) 또는 ‘향미의’(flavored) 라는 용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
 - ‘주스’라는 용어가 원재료명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은 경우
 - 어떤 방법으로든 주스가 함유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경우
- 100% 주스로 만들어진 음료의 경우는 ‘주스’라고 표시할 수 있으나 100% 미만으로 희석된 음료는 음료, 드링크, 칵테일의 의미를 갖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또는 ‘희석(diluted) ____주스’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음

☐ 내용물의 실중량(Net Quantity of Contents) 표기

- 내용물의 실중량이란 포장재나 용기 안에 담겨있는 식품의 양을 가리키는 라벨의 표시 사항임
- 내용물의 실중량은 별도 항목으로서 주표시면의 밑부분 30%이내에서 포장의 바닥면과 평행으로 쓰여져야 함
- 내용물의 중량은 미터법(grams, kilograms, milliliters, liters)과 미국 통상단위법(ounces, pounds, fluid ounces)에 따라 두가지로 표기되어야 함
- 미터법 표기 위치는 미국통상단위법 문구 위치의 앞, 뒤, 위, 아래 모두 가능함
예) Net wt 1 lb 8 oz (680g)
- 내용물의 실중량이란 용기나 포장 안의 식품의 실중량만을 포함하며 용기나 포장지, 포장재의 무게는 포함되지 않음. 실중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채운 용기의 평균무게에서 빈포장용기, 뚜껑, 포장지의 평균무게를 뺄 것
- 일반적으로 용기안의 식품에 부가된 물이나 다른 액체는 실중량 표시에 포함됨

□ 원재료명 목록(Ingredient list) 표기

- 원재료명 목록(Ingredient list)이란 식품에 사용된 각각의 원재료를 주된 것부터 내림차순(중량이 가장 많은 것부터 가장 적은 것의 순서로 쓰는 방식)으로 나열한 것을 말함
- 원재료명 목록은 식품명, 제조자, 포장업자, 유통업자의 주소 등이 있는 면(주 표시면이나 정보표시면)과 같은 면에 있어야 하고 영양표시, 제조자, 포장업자, 유통업자 주소의 앞이나 뒤에 표시할 수 있음
- 원재료명은 규정에 다른 용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, 통상 이름을 사용
예) 과학용어인 ‘sucrose’ 대신 ‘sugar’를 사용함.
- 허가된 방부제(preservative)를 식품에 첨가할 경우 원재료명에 그 방부제의 일반적 또는 통상적 명칭을 기재하고 아래의 예처럼 방부제의 기능을 명시해야 함
- 예) ‘방부의’(preservative), ‘부패지연’(to retard spoilage), ‘곰팡이방지’(mold inhibitor), ‘향미보호’(to help protect flavor) ‘색상 유지증진’(to promote color retention)
- 향신료(spices), 천연착향료(natural flavors), 인공착향료(artificial flavors)는 원재료명 목록에 특정한 일반적, 통상적 이름을 기재하거나 ‘향신료(spices)’ ‘천연착향료(natural flavors)’ ‘인공착향료(artificial flavors)’라고 표시할 수 있음
- 파프리카(Paprika), 튜메린(Tumeric), 샤프론(Saffron) 등 색소로도 사용되는 향신료는 ‘파프리카’와 같이 실제 이름을 기재하거나 ‘향신료와 색소’라는 용어로 표시함
- 색소의 표기는 공인된 색소의 경우 약어 또는 특정 이름을 사용하고 공인이 면제되는 색소의 경우, 색소 규정이 승인한 색소들만 사용해야 함
- 예) 공인된 색소(Certified colors) : ‘FD&C Red No. 40’ 또는 ‘Red 40’

공인이 면제된 색소(Non Certified colors) : ‘caramel coloring’ 또는 ‘beet juice’

□ 영양표시(Nutrition labeling)

- '94년 5월 8일 이후로 표시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New Nutrition label을 의무화해야 함. 현재 2014년에 신규 식품영양분석표시개정안이 개정작업중에 있어 신규법안이 2016년 12월 31일 전에 최종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임
- 다음의 식품들은 영양표시 면제대상이며 *가 표시된 식품들로 영양정보가 제공되거나 강조표시가 된 경우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함
 - *소규모로 조제된 식품
 - *음식점 등에서 제공되거나 가정으로 배달되어 바로 먹는 식품
 - *제조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조제식품(요리한 고기, 훈제생선, 소시지, 과자, 사탕류)
 - *인스턴트 커피(plain, 무가당)나 대부분의 향신료 등과 같이 특별한 영양소가 없는 식품
 - 조제분유와 4세 미만의 영아, 유아용 식품(이 종류의 식품에 대해서는 수정된 라벨규정이 있음)
 - 식사 보조용 식품(dietary supplements)
 - 의료용 식품(medical foods)
 - 소매되기 전 가공이나 포장을 위해 큰 단위로 수송되는 식품
 - *생식품이나 해산물(자발적으로 겉면에 영양표시를 할 수 있음)
 - 주문 가공생선(Custom-processed fish)이나 사냥육(game meat)
 - 상자 단위의 계란(영양정보를 뚜껑 안쪽이나 상자 안에 삽입)
 - “이 포장은 소매판매용이 아님”이라고 표시되어 안에 여러 단위의 포장에 들어 있고 밖에 모든 필요한 표시문구가 있는 경우
 - Self-service bulk foods : 영양표시는 겉면에 하거나 본래 용기에 잘 보이도록 표시함
 - 판매용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증정용으로 만든 식품

- ‘영양정보(Nutrition Facts)’의 표시는 원재료명, 제조자, 포장업자, 유통업자의 이름, 주소와 함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음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‘대체면(alternative panel)’에 표시할 수도 있음
- 포장이 세로로 공간이 부족해서 위와 같이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로로 표시할 수 있음
- 아침식사용 씨리얼이나 날개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소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(소포장 단위 식품)의 경우에 제조자는 각각의 소포장에 일일이 영양정보 표시를 하거나 한 개의 포장에 통합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

□ 제조자·포장업자·유통업자 표시

- 제조자, 포장업자,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
 - 제조, 포장,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 : 제조, 포장, 유통업자와 제조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회사와 제품의 관계를 명시하는 ‘~에서 제조한’ ‘~에서 유통하는’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
 - 거리주소 : 회사이름과 주소가 현행 전화번호부나 인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 - 도시명, 주명(수입식품일 경우 국가명), 우편번호

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

1. 건강보조식품

□ 관련법규

-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(DSHEA)
- DSHEA에 근거한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 규정은 1997년 9월 23일 입안되어 1999년 3월 23일부터 효력 발생

□ 라벨링 요구조건

- 건강보조식품의 명칭(Statement of Identity) : 통상적, 일반적 명칭과 dietary supplements 표기를 병행 예: “ginseng”
- 순중량(Net quantity) : 예, “60 capsules”
- 구조-기능 주장 및 진술(Structure-function claim and statement) : 예, “This statement has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.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, treat, cure, or prevent any disease.”
- 복용법(Direction for use) : 예, “Take one capsule daily.”
- Supplement Facts panel(건강보조식품영양정보) : 일반식품의 영양분석표와 유사한 것으로 1회분 용량, 활성성분 함량 등이 기재
- 성분목록 : 일반적, 통상적인 명칭으로 함량이 많은 것에서 작은 것의 순
- 제조업체나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 이름 및 주소
- 유통기한표기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표기시, 합법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함

2. 신선농산물

□ 예외조항

- 원재료명 표기 : 이 조항은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선 농산물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이므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- 영양분석표 : 영양분석표 면제대상으로 포장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식품의 경우 구매시점(소매점)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진열대 별도표기를 권장

제3절 라벨링 사례

□ 통관 또는 현지 유통시 문제 사례

- 차류 및 알로에음료가 포함된 음료의 경우 영문 및 제조과정 정보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라벨로 인한 통관거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라벨링에 더욱더 유의 요망 필요
- 인삼조제품의 라벨링 관련 거부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간간히 영문 및 제조자 정보가 누락되어 통관거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
- 라벨링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
 - 현재 미국에 반입되는 한국식품 가운데 15%정도가 라벨링을 하지 않거나 부정표시를 해서 수입이 거부되고 있음.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더라도 현지에서 반입될 때 스티커 작업을 하면 통관시 전혀 문제가 없음. 일부 제품의 실제 내용물과 라벨링이 다를 경우, FDA테스트를 거쳐 부정표시로 반입이 거절될 수 있음

- 반면에 현지 수입자가 생산자, 수출자로부터 정확한 라벨링 정보를 입수하고 라벨링 규정에 맞춰 개선조치를 신청해 승인받는다면 All-In-One Stick On 라벨 등 보다 간결한 방법으로 라벨링하여 수입할 수 있음

제4절 라벨링 관련 규정

□ 관련 법 및 규정

- 연방식품, 의약품 및 화장품법(Federal Food, Drug and Cosmetic Act:FDCA)에 의거 ChapterIV-Food, Section 402-Adulterated Food 그리고 Section403-Misbranded Food(21USC-Section342/Section343)에 따른 관련법은 아래와 같음
 - The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(식품라벨링 및 교육법)
 - The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(건강보조식품 및 교육법)
 - The Bioterrorism Act of 2002(바이오테러리즘법)
 - The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4(식품알러지 라벨링 및 소비자보호법)
-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of 1996(바른 포장 및 라벨링법)은 15USC Chapter 39-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, Section 1451-1461을 따름
- 수입식품원산지표기와 관련해서는 The Tariff Act of 1930(관세법)에 의거 19USC Section 1304-Marking of imported articles and containers를 따름
- 미 식품의약품국규정(FDA Regulations)은 미 연방법 21 CFR Part100-General, Part101-Food labeling, Part105-Food for Special Dietary Use, Part119-

Dietary Supplements that present a significant or unreasonable risk,
Part190–Dietary Supplement and other Parts 102–189에 따름

- CBP Regulations(미세관국토안보부규정)으로 연방법 19CFR–Part1 134 Marking of Country of Origin을 따름

☐ 산업 가이드

- Guidance of Industry : A Food Labeling of 2008
- Guidance of Industry : A Dietary Supplement Labeling Guide

☐ 관련 규정 세부내용 검색링크

- <http://www.fda.gov/Food/LabelingNutrition/FoodLabelingGuidanceRegulatory>
- <http://www.fda.gov/Regulatoryinformation/legislation/default.htm>
- <http://www.accessdata.fda.gov/scripts/cdrh/cfdocs/cfcfr/CFRSearch.cfm>
- <http://www.fda.gov/Food/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>